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146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1463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17가단299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문중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승현

변론 종결 2022. 6. 23.

판결 선고 2022. 8. 25.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17가단299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I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E 대 180m²에 관하여 1984. 11. 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지상 목조 와가지붕 1층 단독주택 1층 40.5m²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피고 명의의 등기

1) 원고는 F의 17세손이자 G의 현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2) 원고는 1953. 4. 24.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4.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건축하여 2016. 2. 4.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대표자 선임에 관한 경위

1) 2011. 10. 31. 10:30경 J이 주재한 총회(이하 '이 사건 오전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M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한편, 같은 날 12:30경 N이 소집하고 B이 주재한 총회(이하 '이 사건 오후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그 총회에서는 O가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오전·오후 총회에서 각각 선임된 원고의 대표자들의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오전 총회	M(2011. 10. 31.) → P(2014년도) → Q(2017년도)
이 사건 오후 총회	O(2011. 10. 31.) → R(2013년도) → S(1015년도) → D(2017. 4. 2.)

3) D은 2017. 12. 29. 원고의 대표자 회장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8. 28. 원고의 대표자를 I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표자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I는 이 사건 소 이외에도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I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7가합221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7가합220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7가합22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8·10호증, 을 제2·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 내지 I는 원고의 적법한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하여 원고에 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전 총회 결의는 위법하거나 종종 유사 단체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후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O와 그 후임 대표자들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종종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종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인데(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참조),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후 총회가 이 사건 종종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로서 적법하게 개최되어, 위 총회에서 대표자 선임에 관한 결의가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I를 원고 종종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창국

판사한승철

판사하승수